

서울국제법연구원 투고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국제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이 기획 또는 발간하는 “서울국제법연구”, “국제판례연구” 및 기타 간행물에 게재될 원고의 작성요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고의 작성)

- ① 원고는 논문, 판례평석, 연구노트, 자료, 서평 등으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 ②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기존에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③ 논문, 판례평석 및 연구노트의 경우, 초록을 작성한다. 초록은 국문 및 영문 또는 기타 외국어로 작성한다.
- ④ 논문, 판례평석 및 연구노트의 경우 원고의 핵심내용을 지칭하는 키워드를 첨부한다.
- ⑤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외국어로 된 원고는 국문원고에 준한다.
- ⑥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경우, A4 편집용지 기준 상하여백 20, 좌우여백 30, 글자크기 11point, 행간 160으로 하여 15매 내외로 한다.

제3조(원고제출)

- ① 원고는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silajams.or.kr>)에서 회원가입 후에 전자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원고제출 시에는 논문유사도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② 원고제출자는 원고의 본문과 각주를 통하여 원고제출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③ 서울국제법연구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저자는 원고를 제출함으로써 서울국제법연구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해당 원고를 복제, 출판, 공중전송, 배포 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제4조(각주표기요령)

- ① 필자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필자가 2인 경우 2인의 이름을 모두 밝히고, 3인 이상인 경우, ‘○○○외’로 표기한다.
 2. 기관저자일 경우 해당 기관명을 표기한다.
- ② 문헌명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서, 논문집, 기타 문헌에 관계없이 책자의 명칭에 대한 표기는 국문인 경우 「 」, 또는 어떠한 표시도 추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영문인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2. 논문, 기타 책의 일부로서 발표된 모든 글(신문기사 포함)에 대한 표기는 그 글의 제목을 “ ”안에 포함시킨다.
- ③ 발행년월일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서 및 기타 단행본인 경우 발행년도를 표기한다.
 2. 연간 간행물인 경우 발행년도를 표기한다.
 3. 논문집 기타 연2회간 이상 월간까지의 정기간행물인 경우, 권·호수 및 발행년도를 표기한다. 이 경우 발행년월을 표기할 수도 있다.
 4. 주간지 및 일간지인 경우, 발행년월일을 표기한다.
- ④ 쪽수를 표기함에 있어서 국문문헌인 경우 ‘쪽’ 또는 ‘p.’, ‘pp.’를 혼용한다.
- ⑤ 인용문헌별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서

가. 요령

- i) 국문, 일본어 및 중국어 저서일 경우 책명을 「 」로 표기하거나 또는 어떠한 표시도 추가하지 않을 수 있다.
- ii) 서양문헌인 경우, 책명을 이탤릭으로 표기한다.

나. 예시

- 1) Michael Byers, *Custom, Power and the Power of Rule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100-121.
- 2) *Ibid.*
- 3) 이한기, 국제법강의, 신정판 (박영사, 1997), p.10.
- 4) 상계서, p.20.
- 5) M. Byers, *supra* note 1, p.141.
- 6) 이한기, *supra* note 3, p.21. 또는 이한기, 전계서, p.21.

2. 논문집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논문

가. 요령

- i) 논문이 게재된 문헌명은 저서명 표기와 같이 처리한다.
- ii) 논문이 게재된 문헌은 그 해당권호와 발행년도(발행년월을 밝혀도 무방함)를 밝힌다.
- iii) 반복인용시 저서와 같은 방식에 따르되, 국문인 경우 ‘상계논문’, ‘전계논문’으로 표기한다.

나. 예시

- 1) 홍길동, “국제법상 자위권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XX권 제Y호(2000. 2), pp.100-121.
- 2) Dieter Papenfuss, “The Fate of the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GDR within the Framework of German Unificat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2, No. 2 (1998), pp.467-470.

3. 학위논문

가. 요령

- i) 저자명, 논문명, 학위논문의 종류, 학위수여대학명 및 제출년도의 순으로 표기한다.
- ii) 반복인용시 저서 및 논문의 경우와 같은 방식에 따른다.

나. 예시

- 1) 홍길동, 국제법상 형평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XX대학교 (2000. 2), p.245.
- 2) A. Arnold,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ustomary Law, Ph. D. dissertation, YY University (1998. 5), p.400.

4. 편집된 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논문 또는 글

가. 요령

- i) 해당논문 또는 글의 필자명, 해당논문 또는 글의 제목, 편집자명, 편집된 저서의 제목을 표기하고 그 이후는 저서의 경우와 같은 방식에 따른다.
- ii) 반복인용시 저서 및 논문의 경우와 같은 방식에 따른다.

나. 예시

- 1) 홍길동, “국제법과 국내법간의 관계”, 일지매 (편), 한국과 국제법 (XY출판사, 1999), pp.54-56.
- 2) John Freid, “How Efficient is International Law?,” in Karl Deutsch and Stanley Hoffmann(eds.),

The Relevance of International Law: Essays in Honor of Leo Gross (Schenkman, 1968), p.93.

5. 자료

가. 국제사법재판소 및 중재법정 판례

예시: *Application for Review of Judgement No. 333 of the United Nations Administrative Tribunal,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87), p.22.

나. 일간지

예시: 홍길동, “외국인노동자 문제 이대로는 안된다”, XX일보 (2000. 11. 2), p.14.

다. 기타 자료들은 발행기관명, 자료명, 권호수, 발행년월, 페이지의 순으로 게재한다(권호수 및 발행년월 대신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해당자료의 고유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게재한다).

제5조(참고문헌)

① 본문 및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 및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도 저자가 참고하였을 경우 이를 참고문헌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참고문헌은 국내 문헌과 기타 동양문헌, 영어, 기타 서양문헌의 순서로 배치하고, 국내 문헌의 경우 저자명의 가나다순으로, 외국 문헌은 저자 성 (surname)의 알파벳순으로 기재한다.

③ 문헌의 표기는 다음을 따른다.

1. 정기간행물의 경우 저자명, 논문 제목, 간행물 제목, 권호수, 연도의 순서로 기재한다. 정기간행물이 아닌 경우 저자명, 도서 제목, 출판횟수, 권(Vol), 출판사, 연도의 순서로 기재한다.
2. 논문 제목은 국내 문헌의 경우 따옴표를 사용하여 표시하고, 외국 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간행물 제목 및 도서 제목은 국내 문헌의 경우 『』를 사용하고, 외국 문헌의 경우 간행물 제목은 일반 글자체로, 도서 제목은 이탤릭체로 각각 표시한다.
3. 기타 자료들은 서울국제법연구원 투고규정 제5조를 기본으로 하되, 쪽수를 기입하지 아니하고 각 분류를 온점(.)으로 구분한다.

4. 예시

- 1) 이한기. 『국제법강의』, 신정판 (박영사, 1997).
- 2) Michael Byers, *Custom, Power and the Power of Rule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3) 홍길동, “국제법상 자위권에 관한 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XX권 제Y호 (2019).
- 4) Dieter Papenfuss, *The Fate of the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GDR within the Framework of German Unification*,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92, No. 2 (1998).

부칙(이사회 결의: 2002. 2. 26)

본 규정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사회 개정결의 2020. 1. 11)

본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사회 개정결의 2022. 5. 27)

본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